

연안 양식장 환경 오염 피해분쟁 조정사례

정 혁 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1. 머리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풍부한 수산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륙의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항만의 수출입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해양오염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해안지역의 간척·매립사업이 '70·'80년대 들어 활발해지면서 이들이 연안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한 것이 해양환경 오염 피해를 증가시킨 결정적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땅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개발시대에 바다를 매립하여 땅을 만들면 크게 득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바다를 매립하여 육지를 만들고 여기에 농토를 조성하여 곡물을 생산하거나, 공단을 조성하여 공장을 세웠을 때의 소득만 생각했지 연안 생태계 파괴로 인하여 나타나는 손실은 중요시하지 않은 것이다.

작년에 환경 오염 피해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 총 금액은 5백3억 원이었으며, 이중 85%인 4백50억원이 연안 어장의 해양 수산물 피해였다. 따라서, 우리 나라 국민들이 '93년도에 가시적으로 느끼고 있는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 대부분은 바다에 있었다는 이야기

가 된다. 우리나라 서남해 연안에서 양식하는 해태, 굴 등 수산물의 가치는 매립지에서 얻어지는 농산물의 가치보다 큰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다 엄격한 환경 영향 평가 과정을 거쳐, 매립 등 해안 개발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탱 가능한 것인지 명확히 따져 본 후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사건의 개요

1) 피신청인은 현대석유화학, 현대정유 및 삼성종합화학 등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들로서 이들은 '86~'90에 걸쳐 충남 서산군 대산에 석유화학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공사를 시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매립된 땅은 대산공단으로 지정되었다. 이 공단에 피신청인중 공장을 맨처음 가동한 것은 현대정유로서 '88년 12월 이었다. '91년 9월부터는 현대석유화학 및 삼성종합화학도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2) 신청인은 충남 당진군 난지도 어민들로서 박용수외 1백8명이다. 이들은 '92년 12월 대산공단의 3개사 가동 이후 굴, 해태, 바지락 등의 피해 발생을 호소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충남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93년 3월 충남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인과관계 규명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동 사건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송 처리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93년 8월 조정안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게 조정안 수락 권고를 하였다.

3)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대산읍 대죽리, 독곶리 일대 해안을 매립하여 3개사가 설립 가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배출되는 폐수 및 3개사의 선박이 입·출항하는 과정에서 난지도 어장에 유류 등을 유출시켜, '89년부터 작황이 불량하다고 주장하며, '89~'92년간의 피해 배상으로 31억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폐수 및 매연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정상 가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류 오염의 대부분이 이 지역을 통과하는 인천항 입출항선박의 해난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내용

1) 위와 같은 양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조정안 내용을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동 위원회의 사실 조사 내용을 보면,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하여 피해 지역인 당진군과 대조 지역인 용진군, 부안군, 완도군의 단위 시설(책)당 해태 수확량을 비교한 결과 대산공단 3개사 가동전('86~'88)에는 당진군이 대조 지역 대비 122.8%로 더 많았으나, 현대정유(주) 가동 이후 단위 시설당 평균 생산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나머지 2개 회사가 모두 가동한 후인 '92~93년 산은 대조 지역대비 14.3%로 저하되어 해태 수확량이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대산공단 3개사 가동으로 발생되는 각종 오염 물질과 난지도 인근의 해태 및 바지락 양식어장과 자연산 굴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각종 문헌 조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 검토한 결과 해태는 저온성 생물로서 수온 상승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산공단 3개사의 폐수와 해수의 수온 차가 해태 양식 기간중에 최고 11°C나 될 뿐 아니라, 밀물시 조류를 따라 난지도 어장으로 물덩어리(수괴)를 이루면서 유입되게 되므로 해태 양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3개사 공장의 폐수중에는 해태와 바지락 등 패류에 유해한 기름 성분(노말헥산 추출물질)과 크롬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누적될 경우 피해 유발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3) 또한, 3개사의 보일러 가동으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는 안개의 미세한 물방울에 용해되어 묽은 황산이 되고 해태에 닿으면 순

식간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 대산공단 3개사가 난지도 어장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어, 4계절 동안 고르게 나타나는 남서풍의 영향으로 아황산가스가 난지도 어장에 도달되어 피해를 입힐 수 있어 대산공단 3개사 가동과 난지도 어장 피해는 그 인과관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4) 다음으로 피해 배상 수준에 대한 조정안 내용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해태 양식 피해는 대산공단 3개사의 가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없었을 경우 피해지역의 '90~'93년간 해태 정상 예상 수확량은 3개사 가동전 3년 ('86~'88)간의 단위 시설인 책당 평균 수확량 85.5속을 적용하고, 피해 기간('90~'93)동안 실제 생산량은 어민들이 당진군 자료보다

높은 46.5속을 주장하므로 이를 실제 생산량으로 하여 피해율을 산정하면 45.6%로서 책당 39속의 피해에 해당되며, 해태의 속당 가격은 신청인이 3천원이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물가자료 검토 결과 이와 일치함으로 이를 적용한다.

그리고, 4년간('90~'93)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4개 어장중 1794호는 '92년 11월~'93년 12월까지 휴업 신고된 어장이기 때문에 3년간의 피해를, 1141호, 1792호, 1793호 어장은 4년간의 피해를 인정하며, 난지도 어장 인근의 각종 방조제 공사 등에 의한 갯벌의 침식 및 부유 토사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하여 손해의 공평 부담 견지에서 20%를 감액 요인으로 하여 배상액을 산



정하면 5억 1천 4백 80만원이 된다.

5) 다음 바지락 양식 피해는 피해 지역 양식장은 '90년 4월에 신규 허가된 어장으로서 국립수산진흥원 태안 어촌지도서의 자료에 의거, 피해 지역과 가장 가까운 태안군의 2년간('91~'92) 연평균 생산량은 ha당 1만4천6백 57kg에서 피해 지역 실제 생산량 4천8백kg을 제외한 9천8백57kg을 피해 생산량으로 인정하고, 바지락 1kg당 가격은 신청인이 7백 50원이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수협 충남지회 위원단가('91~'92)를 확인한 결과 평균 가격이 1천 1백41원이므로 신청인이 주장한 kg당 7백50원을 적용한다. 또한 해태 양식 피해에서와 같이 손해의 공평 부담 견지에서 20%를 감액 요인으로 하고, 신청인들이 배상 요구한 2년간('91~'92)의 피해를 인정하여 배상액을 산정하면 5천 9백 14만 2천원이 된다.

6) 끝으로 자연산 굴, 바지락 등 어패류 채취 피해는 자연산 어패류 채취 피해 보상에 관한 사례를 조사한 결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군장지구 조성 사업과 관련된 용역 조사(군산수전, 어업피해보상에 대한 조사 연구, '91. 6)에 의거 자연산 어패류 채취 보상 시 가구 1인당 평년 수익액을 3백29 만1천원으로 산정한 사례가 있어 이를 적용하고, 피해율은 해태와 동일하게 45.6%, 복합 오염원에 의한 영향 20%를 감안하고 4년간('89~'92)의 피해를 인정한다. 또한 현대정유가 난지도 어촌계장과 어패류 채취권을 영구히 포기하기로 합의하고 보상금을 지급하

였는데, 당시 보상금이 영구보상으로서 적정 보상액이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산업법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산출하여 비교한 결과, 기보상액은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서 정당한 영구 보상으로 볼 수 없어 영구보상의 효력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자연산 어패류 피해 배상액에서 기배상액을 제외하고 피해액을 4억4천9백 82만7천원으로 한다. 따라서, 해태 양식·바지락 양식·자연산 어패류 채취 피해 배상액을 합산하면 10억2천3백76만9천원이 된다.

4. 조정안에 대한 당사자들의 승복 여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위와 같이 마련한 조정안은 '93년 8월 24일 양 당사자에게 송부되었으며, '93년 9월 27일 피신청인인

대산 3개사의 조정안 수락 거부로 조정에 의한 분쟁 해결은 중단되었다. 원래 조정제도는 양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하고 이에 따른 구속력이 생긴다. 그러나, 양 당사자중 어느 일방이라도 수락을 거부하면 조정안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조정은 중단된다. 따라서, 조정이 중단된 경우에는 당사자 누구라도 조정보다 더 엄격한 절차인 재정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거나,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본 경우는 가해자인 대산 3개사 측에서 '93년 12월 15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신청을 해 왔으며 현재 재정 절차가 진행중이다. ◎

